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장성광 소유물건(2025타경507676)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형

감정평가서번호: RB250226-03-310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부동산)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조민호

(주)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지사장 박치영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이억삼천만원정 (₩230,000,000.-)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형		감정평가 목적	경매		
제출처	인천지방법원 경매13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장성광 (2025타경507676)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제시목록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3.05	2025.02.28 ~ 2025.03.05	2025.03.05	
감정 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230,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230,000,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지하철 부평역(1호선, 인천1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해피에이스 제10층 제1003호(전유면적: 77.29㎡)]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이 의뢰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하였음.

3.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03월 05일로 함.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의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5년 02월 28일에서 2025년 03월 05일이며, 귀 제시목록 및 관련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거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5. 기준가치

본건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감정평가 조건

해당사항 없음.

7. 그 밖의 사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 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통상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 평가는 곤란하나, 귀 원의 제시사항에 의거 토지와 건물에 귀속되는 각각의 배분 가격을 함께 병기하였으니 귀 원 업무에 참고바람.
- 본건을 감정평가하기 위하여 현장조사에 임하였으나 거주인의 부재로 내부구조를 확인하지 못하여 외부관찰 및 인근 탐문,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거하여 도시하고 표준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바,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귀 원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 본 호수의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 현관문의 호수 표시, 외부 관찰 등에 의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대상물건의 개황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79-8외 2필지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434 (부평동)]		
건물명, 층, 호수	해피에이스 제10층 제1003호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사용승인일	2015.06.03
면적(m ²)	전유면적	공용면적	대지권면적
	77.29	15.7	10.7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III.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감정평가방법의 개요

감정평가방법은 대상물건의 성격·감정평가목적 또는 조건에 따라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 및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이 있음.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방법의 내용
거래사례 비교법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원가법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의 제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이 때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제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임.
수익환원법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본건 구분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주위환경, 입지조건, 건물의 구조, 설비 및 층별·위치별 효용성 등 제반 가치형성요인과 인근 유사 물건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인 대지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 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은 주된 평가방법 외에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된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성 있는 구분건물인 대상 물건의 성격, 가격형성과정상 및 임대사례의 비노출성 등에 의해 원가방식 및 수익방식의 적용이 곤란하여 다른 평가방법에 의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2. 거래사례비교법

가. 개요

거래사례비교법이란 시장성에 근거하여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및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기준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비준가액이라함.

$$\text{비준가액} = \text{사레가격}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비교} \times \text{개별요인비교} \times \text{면적비교}$$

나. 비교사례의 선정

1) 가격조사 자료

1.1) 인근 유사 물건의 가격수준

유형	가격수준(원/㎡)	비고
오피스텔	층, 구조 등에 따라 전유면적당 약 2,500,000 ~ 3,000,000 내외	실거래가격 및 현장조사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2) 경매낙찰가율

지역	유형	매각률(%)	매각가율(%)	비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오피스텔(주거용)	36.26	77.19	최근1년 기준
	아파트	46.38	85.04	

※자료출처 : 지지옥션

1.3) 인근 유사물건 감정평가 및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층, 호	면적(㎡)	거래(평가)시점	거래(평가)금액 (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비고
①	부평동 000	2층 000호	73.27	2024.04.12.	220,000,000	3,002,593	경매평가
②	부평동 000	5층 000호	77.29	2025.01.03.	219,000,000	2,833,484	경매평가
A	부평동 000	4층 000호	77.29	2023.06.24.	210,000,000	2,717,040	거래사례
B	부평동 000	5층 000호	69.94	2023.07.26.	160,000,000	2,287,675	거래사례
C	부평동 000	6층 000호	69.94	2024.04.06.	184,000,000	2,630,826	거래사례
D	부평동 000	7층 000호	73.27	2023.02.24.	228,000,000	3,111,778	거래사례

※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부동산원)

2) 비교사례의 선정

대상물건과 지리적 접근성 및 물적 유사성이 높고,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 등에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 (D)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사정보정

비교사례는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가격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음.(1.000)

라. 시점수정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요지역별,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월별 인천광역시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함.

비교사례 매매 당시 가격지수	2023.01	103.56
본건 기준시점 적용 가격지수	2025.01	97.19
시점수정치	-6.151% (0.93849)	97.2 / 103.6 -1

※ 거래시점 : 2023.02.24, 2023년 01월 지수를 적용함.

기준시점 : 2025.03.05, 2025년 02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발표 이전이므로 2025년 01월 지수를 적용함.

마.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비교사례는 동일지역에 위치하므로 지역요인은 동일함.(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바.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요인구분	세부항목(주거용)
단지(건물)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단지(건물)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 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호별 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석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개별요인 비교

기호	단지(건물) 외부 요인	단지(건물) 내부 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비교치
가	1.00	1.00	1.02	1.00	1.020
본건은 사례 대비 호별요인(층별 효용 등)에서 우세함.					

사. 적용단가의 결정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적용단가 (원/㎡)
가	3,111,778	1.000	0.93849	1.000	1.020	2,978,78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

기호	면적 (㎡)	적용단가 (원/㎡)	산정금액 (원)	비준가액 (원)
가	77.29	2,978,780	230,229,906	230,000,000

3. 토지·건물 배분 가액

배분비율표는 배분비율 산정방법 중 토지건물 배분법을 적용한 것으로, 집합건물의 토지·건물 배분 비율은 이 비율표를 참조하되, 집합건물의 평가는 건물의 위치, 주변환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약요인을 고려하여 적용하였음.

가. 아파트 토지·건물 배분비율표

구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0년 초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전국	5	5	5	5	6	4	6	4	6	4	7	3	8	2	
인천	5층 이내	4	6	4	6	4	6	5	5	6	4	6	4	7	3
	6~15층	4	6	4	6	4	6	5	5	5	5	6	4	6	4
	16층~20	4	6	4	6	4	6	5	5	5	5	5	5	5	5
	21~25층	4	6	4	6	4	6	4	6	5	5	5	5	5	5
	26~30층	4	6	4	6	4	6	4	6	4	6	4	6	4	6
	30층 초과	4	6	4	6	4	6	4	6	4	6	4	6	4	6

※ 자료출처 : 공동주택의 구분평가지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한국부동산 연구원, 202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오피스텔 토지·건물 배분비율표

구분		해당층												
		지하		1층		2층		3~5층		6~10층		11층이상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오피스텔	서울	5층이하	5.2	4.8	5.2	4.8	5.2	4.8	5.2	4.8	5.2	4.8	5.2	4.8
		6~10층	4.4	5.6	4.4	5.6	4.4	5.6	4.4	5.6	4.4	5.6	4.4	5.6
		11층이상	4.1	5.9	4.1	5.9	4.1	5.9	4.1	5.9	4.1	5.9	4.1	5.9
	수도권	5층이하	3.9	6.1	3.9	6.1	3.9	6.1	3.9	6.1	3.9	6.1	3.9	6.1
		6~10층	3.9	6.1	3.9	6.1	3.9	6.1	3.9	6.1	3.9	6.1	3.9	6.1
		11층이상	3.0	7.0	3.0	7.0	3.0	7.0	3.0	7.0	3.0	7.0	3.0	7.0
	광역시	5층이하	3.0	7.0	3.0	7.0	3.0	7.0	3.0	7.0	3.0	7.0	3.0	7.0
		6~10층	2.8	7.2	2.8	7.2	2.8	7.2	2.8	7.2	2.8	7.2	2.8	7.2
		11층이상	2.8	7.2	2.8	7.2	2.8	7.2	2.8	7.2	2.8	7.2	2.8	7.2

※ 자료출처 : 집합건물 구분평가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한국부동산 연구원, 2007)

나. 평가대상 부동산의 토지·건물 배분비율

기호	감정평가액	토지·건물 배분비율		비고
		토지(3)	건물(7)	
가	230,000,000원	69,000,000원	161,000,000원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기호	감정평가액(원)
가	230,000,000

2.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본건 감정평가액은 비교사례분석, 인근 시세분석, 거래동향의 파악 등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산출하였으며, 평가사례 및 인근 가격수준, 대상물건의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바 본건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 하 여 백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지하철 부평역(1호선, 인천1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부평역(1호선, 인천1호선)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공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지붕 지하 1층 / 지상 15층 건물 중 제10층 제10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15.06.03)
외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후면"내부구조도"참조)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난방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종근린 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노폭 약 30미터,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3필지 공히: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 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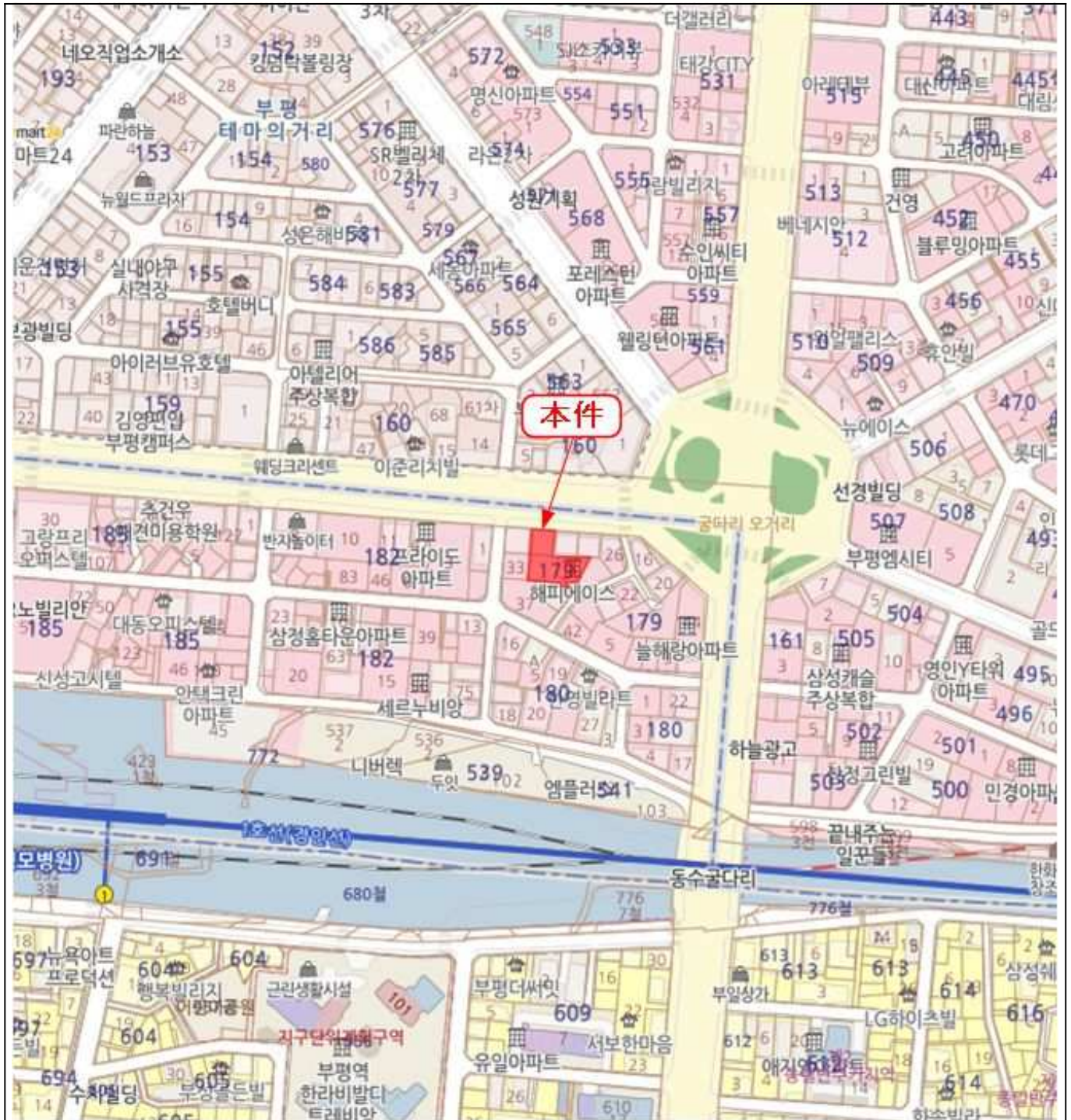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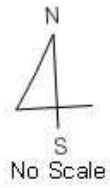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79-8외 2필지 해피에이스 제10층 제10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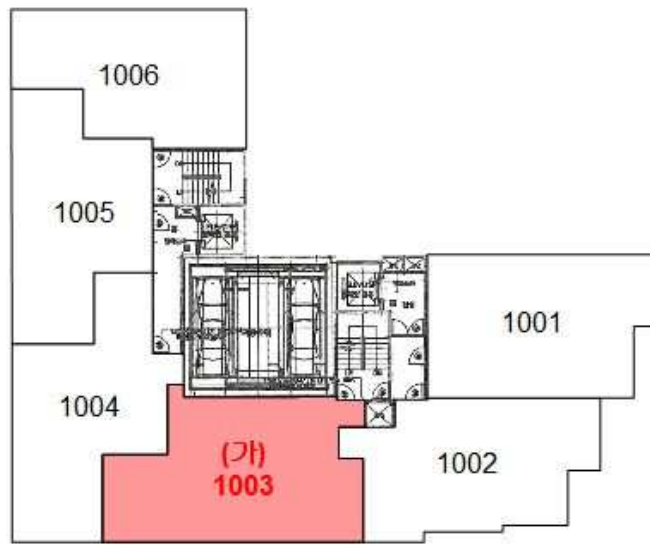
내부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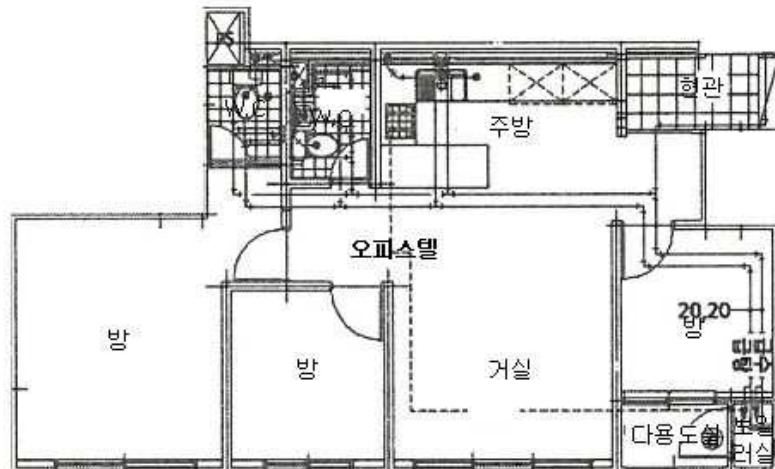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79-8외 2필지 해피에이스 제10층 제1003호



[호별배치도]



[내부구조도]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확인하지 못하여 외부관찰 및 인근 탐문조사,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거 도시하였는바, 귀 원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10 1003

